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보도 참고 자료			
	보도	2016. 11. 9.(수) 조간	배포	2016. 11. 7.(월)
담당부서	상호여전감독국	김태경 국장(3145-7550), 최성배 팀장(3145-7440)		

제 목 : 금융꿀팁 200선 - [17] 신용카드 제대로 활용하기

① 카드 선택시 고려사항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 매주 1~3가지씩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 동시에 2016.9.1일 개설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도 게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열 일곱번째 금융꿀팁으로, “카드 선택시 고려사항”을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

<별첨> 금융꿀팁 200선 - (17) 신용카드 제대로 활용하기 ① 카드 선택시 고려사항

금융감독원은 작년에 이어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금융관행 개혁 포털' (<http://better-change.fss.or.kr>) 내 '국민 참여방'으로 제보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제 목	‘카드 선택시 고려사항’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1) 최근에 직장동료의 권유로 A카드사의 OO카드를 새로 발급 받은 김진규(34세, 가명)씨는 인터넷 쇼핑 중 마음에 드는 카메라를 발견하여 평소 자주 이용하는 OO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카드결제 과정에서 자신이 소지한 OO카드로는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카드를 만들기 전에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음 ● (사례2) 박민정(28세, 가명)씨는 마트할인을 위해 OO카드를 이용해 오던 중 학원에 다니게 되면서 학원비 할인이 되는 △△카드를 추가로 발급 받음. 이후 최신형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통신요금 할인 목적으로 ◇◇카드까지 발급 받았으나 갑자기 대출을 받게 되면서 대출 상환 부담으로 씀씀이를 줄여야 해 각각의 카드에 대한 전월실적을 채우기 어렵게 되었고, 이에 따라 카드사가 제공하는 각종 할인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었음 ● (사례3) 오상민(46세, 가명)씨는 특급호텔 무료 식사권 및 숙박권, 골프장 할인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된 OO카드를 발급 받았으나 높은 연회비 부담으로 결국 1년 후 카드를 해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 동안 쌓은 카드거래 실적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음

☞ 새로 카드를 만들 때는 다음 여섯가지 사항을 꼼꼼히 따져 보고 선택하세요!

① 본인의 지출성향

금감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2016. 10월 현재 19개 카드사가 약 1만여개 이상의 카드상품을 내놓고 있을 만큼, 다양한 종류의 신용·체크카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카드들은 각기 다른 무이자 할부혜택과 부가 서비스(포인트, 제휴할인 등)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과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지출(소비)성향을 꼼꼼히 따져 보고 카드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자신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업종이나 항목·분야에 무이자 할부혜택과 부가서비스를 많이 부여하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인터넷 쇼핑몰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해당 인터넷 쇼핑몰 제휴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쇼핑몰 이용 금액에 대한 할인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 여행시 항공편을 많이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항공사 제휴 마일리지 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항공사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추후 항공권 구매시 이를 활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본인의 월평균 지출규모

카드상품별로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혜택이나 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전월 사용금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이에 따른 월평균 지출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종류의 부가서비스 혜택에만 매달려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 받을 경우

그만큼 실적조건을 채우기 어렵게 되고 이들 부가서비스 혜택 등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때는 본인의 지출규모를 감안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소득공제 VS 부가서비스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를 선택할 때는 “**소득공제**” 혜택에 주안점을 둘지, 아니면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에 주안점을 둘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연말정산시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큰 반면*, 대체적으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혜택은 적기 때문입니다.

*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의 2배

따라서 소득공제에 중점을 두는 소비자라면 “**체크카드**”를, 부가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소비자라면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카드사들이 체크카드에도 웬만한 신용카드 못지않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을 내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④ 편의성 VS 안전성

카드를 여러 장 보유할 경우 사용처에 따라 무료입장, 할인 혜택 등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분실·도난에 따른 위험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여러 장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편의성 뿐만 아니라 안전성 측면도 고려하여 카드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필요 이상으로 많은 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계획적인 소비지출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여러 장의 실물카드 소지에 따른 불편을 생각한다면 모바일 카드를 발급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편의성과 휴대폰 분실시 감수해야 할 안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바일 카드는 카드사마다 발급 및 이용, 결제방식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⑤ 연회비 부담

연회비는 카드사가 카드발급 및 배송, 회원관리, 부가서비스 제공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일정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카드에 탑재되는 부가서비스가 많거나 고가일수록 연회비 부담도 커집니다.

또한 한 해 동안의 이용 실적 등을 감안하여 그 다음해에 연회비가 면제되거나 새롭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회비가 비싼 카드를 발급 받을 경우에는 연회비 부담과 부가서비스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미 해외겸용 카드를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겸용카드보다는 연회비가 저렴*한 국내전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국내전용카드가 해외겸용카드에 비해 2,000원~5,000원 정도 낮음

⑥ 상품안내장의 이용조건 확인

카드사들이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이용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여러 조건을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 포인트 적립 제외대상 예시 : 대학등록금, 무이자할부,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 전월실적 제외 문구 예시 : "(청구) 할인 받은 해당 매출 건 전체" 통합 할인한도 예시 : 전월실적 60만원 이상시 OO식당 이용금액 20% 할인
OO마트 결제금액 15% 할인(월 통합 할인한도 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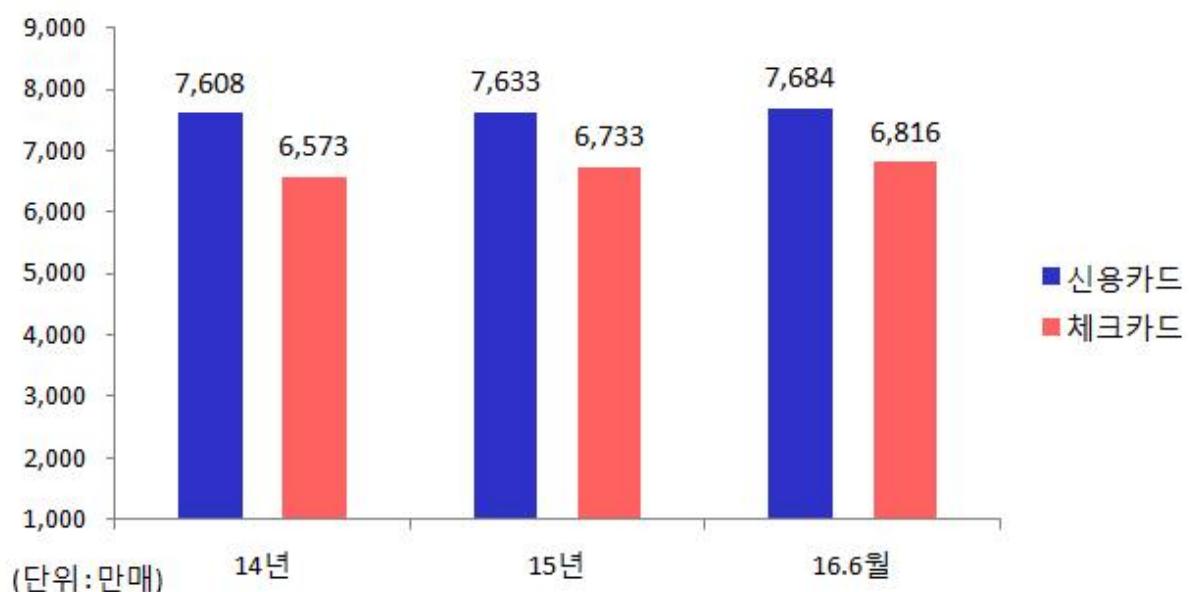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혜택 위주로 카드상품을 홍보하기 때문에 카드를 선택하기 전에 상품안내장 등에 기술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포인트 적립 및 전월실적 제외 대상, 통합 할인한도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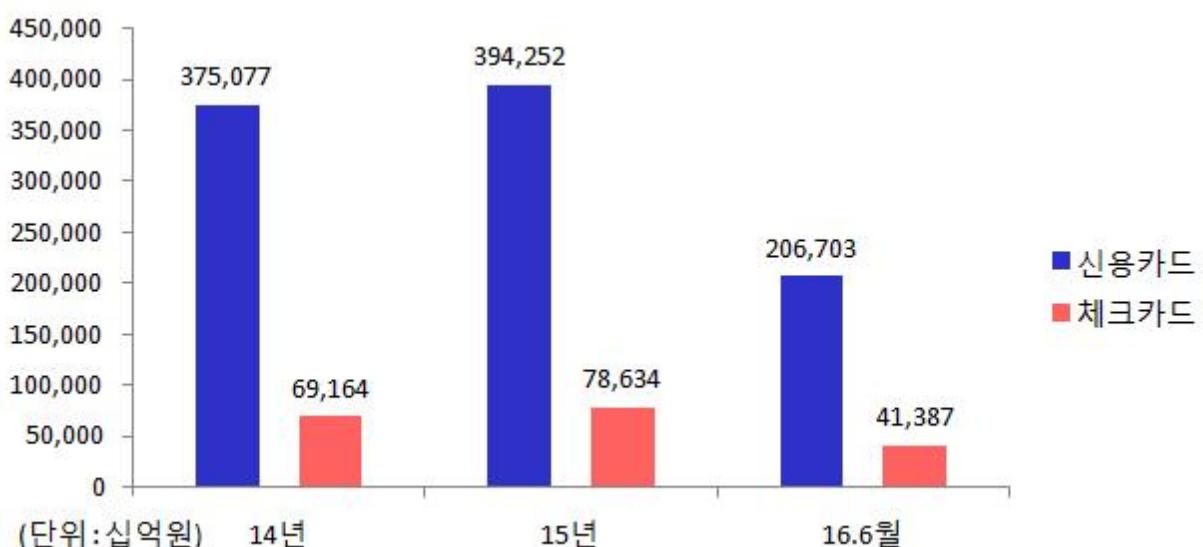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FINE"을 이용하면 본인의 카드 포인트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FINE 메인페이지 → 금융거래 메뉴 → 포인트 통합 조회)

<붙임> 전업 카드사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이용실적 추이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 현황(매년 말 기준)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이용 현황



* 이용실적 : 기간 중 이용액, 기업구매전용카드액 및 국세 카드납부액 제외